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107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규정을 재정여건 및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조정하고,
-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운영

주요골자

-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 규정(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%이상)을 당해년도 기금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10%범위내에서 출연하도록 조정(안 제3조 2항)
- 위원회 정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폐지하고 동 기능을 도정조정 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(안 제14조, 제15조)

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

→

도정조정위원회 통합운영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
- 지방공기업법 제19조

첨 부

1.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3. 관련법규 발췌 1부.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% 범위내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중 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”를 “도정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장 제명 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설치운영”을 “기금운영심의”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6조 및 제17조는 이를 삭제한다.

제14조(기금운영심의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심의내용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순위결정 및 용자배분
2.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방법
 - 가. 기금운용계획
 - 나.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
 - 다. 기금유자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